

4.1.6 교직원보수규정

제정	1996. 06. 19.
개정	2006. 10. 19.
개정	2012. 03. 16.
개정	2014. 04. 28.
개정	2015. 12. 29.
개정	2017. 01. 19.
개정	2017. 09. 14.
개정	2018. 10. 23.
개정	2019. 06. 25.
개정	2019. 08. 29.
개정	2022. 11. 08.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05. 28.
개정	2025. 0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학원 정관 제85조 및 제112조에 의거 초당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교원임용규정 제2조 및 직원인사규정 제2조, 조교임용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08.29., 개정 2024.05.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교원은 본봉과 연구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직원은 본봉과 직무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보수”라 함은 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학사지도비”라 함은 학생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연구보조비”라 함은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의 결정) 이 규정 제2장과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의 지급액은 매년 회계연도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연봉제로 구분하여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4.04.28.>

제5조(계산기간)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지급일 및 보수지급방법) ①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토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01.19.>

② 사망자나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교직원의 보수는 급여와 수당을 포함한 연간급여액을 12개월 균등분할 지급한다. <신설 2017.01.19.>

제7조(보수의 계산) 교직원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에 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2 장 봉 급

제8조(전임교원) 총장, 부총장 및 전임교원에게는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별표 12>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와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9조(직원) 일반직, 기술직(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참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0조(계약직급여) 계약직 직원에게는 별도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4.04.28.>

제3장 수 당

제11조(적용의 범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2조(상여수당) 상여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영 제6조의 2(대우공무원수당), 영 제7조(정근수당), 영 제7조제3항(정근수당 가산금)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가계보존수당) 가계보존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 영 제10조(가족수당), 영 제11조(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4조(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규정 영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영 제17조의 2(관리업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5조(일·숙직수당) 직원이 일·숙직 근무를 한 경우에는 일·숙직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6>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8.>

제16조(직원복지수당) 공무원보수규정 중 직원의 성과상여금을 직원복지수당으로 대체 하되 지급방법은 3월, 6월, 9월 은 본봉의 50% 지급하고, 12월은 본봉의 100%지급한다.

제17조(연구보조비)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04.28.>

제18조(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04.28.>

제19조(학사지도비) 정규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사지도비를 지급한다.

- 제20조(보직수당) 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3>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04.28.>
- 제21조(실비변상 등) 실비변상 등은 공무원 수당 규정 영 제18조(정액급식비), 영 제18조의2(교통보조비), 영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18조의4(가계지원비), 제 18조의5(연가보상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 제21조의1(급식지원) 계약직 및 조교에 한하여 교내식당 이용 시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05.28.>
- 제21조의2(급식보조수당) 교외 근무자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쳐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8.>
- 제22조(그로스상여) 그로스상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4>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04.28.>
- 제23조(특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규정 영 제13조(위험근무수당), 영 제 14조(특수업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 제23조의2(특별성과급) 특별성과급은 업무성과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교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1.19.>
- 제24조(기타수당)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수당은 국가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 제24조의2(연구장려금) 승진 교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준하여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년 9월에 지급한다. <신설 2022.11.08.>
- 제24조3(관리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7>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8.>
- 제24조4(업무수당) 업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8>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8.>
- 제24조5(면허수당) 면허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9>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8.>
- 제24조6(부속기관수당) 부속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당은 부속기관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8.>
- 제24조의7(조교겸무수당) 겸무수행 조 교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0>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8.>
- 제24조8(연봉수당) 교직원보수규정 제3장에 열거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수당으로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5.28.>

제4장 기 타<신설 2014.04.28.>

- 제25조(성과급적연봉제)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6조(연봉제)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결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의 보수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결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의 보수지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2.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03.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의 지급된 보직수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2018년 9월 이후 2022년 9월까지 승진자에게 적용한다.

② 지급일은 매년 9월에 지급하나 2022년도에 한하여 10월에 지급한다.

③ 2018~2022년 승진자의 연구장려금은 연도별 소급적용하지 않고 아래의 [표1]과 같이 적용한다.

[표1] 지급시기 및 대상(제24조의2 관련)

지급시기	승진대상	지급액
2022년 10월	2018년 9월 ~ 2022년 9월 승진자	5,000,000원/1회
2023년 9월 이후	2018년 9월 이후 승진자	5,000,000원/매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3의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24.06.03.>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 지급된 제3장의 수당은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3의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직원 “연구보조비” 지급 구분표 〈개정 2014.04.28.〉

직급	지급액	직급	지급액
총장	880,000	2급	490,000
부총장	800,000	3급	400,000
교수	590,000	4급	300,000
부교수	560,000	5급	240,000
조교수	530,000	6급	160,000
		7급	130,000
		8급	120,000
		9(등)급	100,000
		10등급	80,000

〈별표 2〉 직원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 〈개정 2014.04.28.〉

직급	월지급액	비고
2급	650,000	
3급	500,000	
4급	400,000	
5급	250,000	
6급	155,000	
7급	140,000	
8급~9급	105,000	
기능8~9등급	105,000	
기능10등급	95,000	

〈별표 3〉 교직원“보직수당”지급 구분표 〈개정 2012.3.16., 2014.04.28., 2017.09.14., 2018.10.23., 2019.06.25.
2022.12.29., 2025.02.24.〉

보직등급	지급액
특A	2,500,000
특B	1,500,000
보직A	1,200,000
보직B	1,000,000
보직C	800,000
보직D	600,000
보직E	450,000
보직F	380,000
보직G	300,000
보직H	250,000
보직I	200,000
보직J	100,000

※ 보직등급별 보직명은 총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별표 4〉 그로스상여 지급(1월,4월,7월,10월) 구분표 〈개정 2014.04.28.〉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액
	총장	500,000	2급	440,000
	부총장	470,000	3급	410,000
	교수	440,000	4급	380,000
	부교수	410,000	5급	350,000
	조교수	380,000	6급	320,000
			7급	300,000
			8급	280,000
			9(등)급	260,000
			10(등)급	240,000

〈별표 5〉 연구장려금 지급 구분표 〈신설 2022.11.08.〉

승진직급	지급액(원)	지급시기
조교수 → 부교수	5,000,000	매년 9월
부교수 → 교수	5,000,000	매년 9월

〈별표 6〉 교직원“일·숙직수당”지급 구분표〈개정 2024.05.28.〉

업무의 범위	지급액(원)	비고
보안 및 방범 순찰, 전화민원 응대	40,000 ~ 80,000	

〈별표 7〉 관리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신설 2024.05.28.〉

대상	기준금액	비율	비고
부총장	본봉	9%	
처장	본봉	7.8%	

〈별표 8〉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신설 2024.05.28.〉

구분	내용	금액(원)	비고
업무수당	회계	20,000 ~ 50,000	담당2만원, 팀장이상5만원
	전산	50,000	
	기계설비책임유지관리	50,000 ~ 60,000	보조5만원, 책임6만원
	전기안전관리 방사선안전관리	100,000 ~ 500,000	관련업무 겸직수행 시
	총장수행	비서 운전	100,000 ~ 600,000 100,000 ~ 500,000

〈별표 9〉 면허수당 지급 구분표〈신설 2024.05.28.〉

단위: 원

구분	내용	보유	사용	합계
면허수당	사서	10,000	10,000	20,000
	전기,방사선,건축	30,000	30,000	60,000
	전산	0	30,000	30,000
	보일러	10,000	10,000	20,000

〈별표 10〉 조교 겸무수당 지급구분표 〈신설 2024.05.28.〉

내용	지급액(원)	비고
2개 학과 담당	300,000	
3개 학과 이상 담당	500,000	